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92

발의연월일: 2021. 11. 18.

발 의 자:정청래·김승원·박 정

서영교・송갑석・양이원영

오영환 · 오영훈 · 유정주

최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결과 육군 사격장이 구석기 유물 산포지인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조사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2004년 미군 소속의 스토리사격장 내에도 구석기 유적과 백제·고구려 성지, 고려 및 조선시대 고분 등이 산재해있음에도 사격훈련 등이이루어져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될 뿐, 문화재에 대한 보호나 후속조치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임.

이에 문화재 보수, 안전관리, 기록정보화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군사보호구역 등 내의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시·도지사와의"를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와의"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u>시·도지사와의</u>	<u>중앙관서의 장</u>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	같다) 및 시·도지사와의
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